

제·개정 및 폐지 예고문

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5. 4.

대한체육회장

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「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선정 절차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 자격 기산점 명확화, 결격사유 확인 절차 명문화, 추천권자 체계 정비, 원로회의기구 폐지에 따른 추천권자 재구성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**선수 후보 자격 기산점 명확화 (제4조 제4항)**
 - 선수의 후보 자격 기산점을 '공식 은퇴일이 속한 달의 말일'에서 '전문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등록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'로 변경
- 나. **결격사유 확인 절차 명문화 (제5조)**
 - 조문을 제1항(결격사유 열거)·제2항(서약서 제출 의무)으로 분리하고, 최종후보자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 의무화
- 다. **후보자 추천권자 체계 이원화 (제6조 제1항)**
 - 현행 혼재된 추천권자 체계를 추천위원(개인)·추천단체(단체)로 이원화하고, 추천단체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·나·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로 명확화
- 라. **결격사유 검토 문구 삭제 (제6조 제5항)**
 - 실질적 검증이 불가능한 결격사유 검토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 서약서 징구로 대체
- 마. **최종후보자 추천권자 정비 (제7조 제1항)**
 - 원로회의기구 폐지에 따라 제3호를 삭제하고, 한국체육학회 추천단(5명 이내)을 제4

호로 신설

- 사. 추천기자단·평가기자단 동일인 참여 제한 (제9조 제1항 제2호)

- 평가기자단 구성 시 추천기자단과 동일인 배제 기준 명문화

3. 의견제출

- 이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의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
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규정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